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522
----------	------

발의연월일 : 2024. 8. 2.

발 의 자 : 배준영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박충권 · 박형수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중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이철규 · 이현승 · 인요한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운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추경호 · 한기호 · 한지아
의원(108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회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그리고 사무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의 무게가 더욱 엄중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국회의원 최민회는 동료 국회의원(박충권)과 3만 4천 북한이탈주민의 명예와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망언을 내뱉었으며, 이후에도 불법적인 회의록 삭제를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았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협박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막말을 거듭하였으며,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후보자에게 사과를 강요해 후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질서유지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유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위원장의 직무를 유기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국회의원(최민회)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이에 다음 이유에 따라 국회의원 최민회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함.

가. 국회의원 최민희는 7월 2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충권 의원을 향해 “(박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라는 망언을 함.

이는 단순한 동료의원 모독을 넘어 3만 4천 북한이탈주민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임. 자유와 행복을 찾아 북한을 탈출한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하 망언은 국회법 제24조의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위반한 것임.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녘 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중해야 함. 북한이탈주민을 ‘전체주의 체제에서 살다왔다’고 운운하며 비하한 것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부정한 것이며, 김씨왕조 체제의 압제와 폭력에 고통을 겪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것임.

최민희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위원회에서 박충권 의원에게 뒤늦게 사과하였으나, 이는 박충권 의원 개인에 대한 사과였을 뿐이

며 3만 4천 북한이탈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지 아니하였음. 동시에 국회의원 최민희는 회의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사과의 실제 의도가 본인의 부끄러운 기록을 국회의 역사에서 삭제하기 위한 ‘역사 지우기’였을 뿐, 진정한 반성의 뜻이 결여된 위선적 사과임.

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불러세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라고 꺾속말로 속삭이며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협박을 가했음.

더 나아가,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며 인격을 모독하는 막말을 가하였음. 후보자와 다수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수차례 막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면서 수차례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을 반복하였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한 동료의원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협박성 막말을 하였음.

이처럼 위원장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위원회 내에서 막말과

협박을 일삼은 것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으로
서 자격을 상실한 것임.

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미리 준비한 서면 자료를 양손으로 들고 발언을 하자, “지금 피켓
투쟁하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시비를 걸면서 후보자의 발언을 중
지시켰으며,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황당한 꾀변을 이어가며
이진숙 후보자의 사과를 강요하였음. 이는 후보자의 발언권과 양심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위원장으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임.

또한, 상기 가.목에서 언급한 박충권 의원을 향한 막말에 대해 회
의록에서 자신의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국회법」
제117조 3항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명백한 위법적·초법적 요구이며, 상임위
원장으로서 직권남용임.

라. 7월 24일, 야당 의원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을 점거하며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함.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심지어 불법시위에 참여한 언론노조 관계자들

은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도 자행한 ‘의회 폭거’ 행위임.

그러나, 국회의원 최민희는 위원장으로서 회의장 앞 질서유지를 위한 어떠한 사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원장의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함.

마. 이외에도 과거부터 술한 막말과 논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이어 왔음. 특히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되었다” 발언으로 외교 논란을 야기하였고, ▲“강원도는 모든 것에 치외법권 지대인가”,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등 지역비하 발언으로 강원도민들의 공분을 야기하였으며, ▲김현 의원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단순 사건”으로 치부하여 논란이 되었고,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지칭하는 막말로 논란이 되었고, ▲임신부 및 워킹맘 비하 논란, ▲비뚤어진 성인식과 인종혐오 논란 등 술한 논란을 야기하였음.

국회의원 최민희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보여준 언행은 이처럼 과거에 본인이 야기한 논란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전히 「국회법」 제25조에 따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최민희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4조와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는 망언과 정치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의원 최민희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